

2017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492호, 제2493호, 제2494호
- 다. 제출일자 : 2017. 5. 31.
- 라. 회부일자 : 2017. 6. 11.

##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3. 결산 개요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156,678	156,678	170,401	151,453	18,948	299	18,649	88.9%

- 세입예산현액은 1,566억 7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704억 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514억 53백만원을 수납하고, 189억 4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2억 9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6억 4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8.9%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17	212,987	6,497	411	8 (-8)	54 (-54)	-	219,895	208,443	3,490	-	3,490	7,962 (3.6%)

- 당초 예산액 2,129억 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 97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4억 1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98억 95백만원으로, 이중 94.8%인 2,084억 43백만원을 지출하고 1.6%인 34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79억 6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54백만원으로  
‘도시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업에서 발생함

####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1건에 8백만원으로
-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에서 발생함

####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2건에 4억 11백만원으로
-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20백만원
-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금 3억 91백만원임.

####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1건에 34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2,198억 95백만원 대비 1.6%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79억 62백만원이며 이는 2,198억 95백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7	219,895	7,962	3.6	
2016	219,518	5,691	2.6	
2015	205,343	7,613	3.7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10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7,846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16만원

##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 1)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15,058	5,657	-	-	-	-	20,715	16,920	3,462	2,000	1,462	333 (1.6%)

- 당초예산액 150억 5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7억 1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9억 20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6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억 3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2)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 비 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20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4억 6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34억 61백만원은 예산현액 207억 14백만원 대비 16.7%임 (명시 이월 9.6%, 사고이월 7.1%)

####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억 3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07억 15백만원 대비 1.6%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7	20,715	333	1.6%	
2016	52,607	29,703	56.5%	
2015	92,667	20,827	22.5%	

####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3억 32백만원

##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20,715	20,715	20,715	20,715	-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207억 15백만원이고 실제 207억 15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207억 15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35,762	19,719	-	-	-	-	55,481	42,485	12,087	9,073	3,014	909 (1.6%)

- 당초예산액 357억 6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1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4억 8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4억 85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8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9억 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90억 73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30억 14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120억 87백만원은 예산현액 554억 81백만원 대비 21.8%임 (명시이월 16.4%, 사고이월 5.4%)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9억 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554억 81백만원 대비 1.6%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7	55,481	909	1.6%	
2016	69,332	9,765	14.1%	
2015	141,228	30,824	21.8%	

####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9억 9백만원



##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3,050	3,050	3,050	3,050	-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30억 5천만원이고 실제 30억 5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억 5천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626,896	73,918	-	1,337 (-1,337)	310 (-310)	-	700,814	566,323	100,390	80	100,310	34,101 (4.9%)

- 당초예산액 6,268억 9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9억 1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08억 1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63억 23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3억 9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41억 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3억 1천 만원으로
-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3억 1천 만원임

#### ○ 변경

- 예산 변경은 12건에 13억 37백 만원으로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1건에 16백 만원
-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1건에 3억 6천 만원
- 신림 ~ 봉천터널 건설 2건에 2억 25백 만원
-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건에 5천 만원
- 안양교 확장 1건에 2억 64백 만원
-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94백 만원
- 사가정길(장안삼거리 ~ 전농삼거리) 확장 1건에 4천 만원
- 성암로 보행단절구간 개선 1건에 1천 만원
-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1건에 1억 28백 만원
- 장안교 성능개선 1건에 42백 만원
- 사천교 성능개선 1건에 1억 8백 만원임

#### ○ 예비비 : 해당없음

#### ○ 이 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7건에 1,003억 1천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1,003억 9천만원은 예산현액 7,008억 14백만원 대비 14.3%임 (명시이월 0.01%, 사고이월 14.3%)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41억 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7,008억 14백만원 대비 4.9%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7	700,814	34,101	4.9%	
2016	681,888	37,080	5.4%	
2015	646,748	28,689	4.4%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억 85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338억 18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 98백만원

## 마 . 도로굴착복구기금

###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17	38,614	-	-	447	16,471	-	21,696	38,614	25,164	13,450	-	-

- 수입은 이자수입 4억 47백만원, 예치금회수 164억 7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216억 96백만원을 합한 386억 14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65.2%인 251억 64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4억 50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4. 검토 의견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156,678	156,678	170,401	151,453	18,948	299	18,649	88.9%
2016	145,511	145,511	172,463	156,550	15,913	130	15,783	90.8%
2015	147,803	147,803	158,832	143,282	15,550	386	15,164	90.2%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566억 7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704억 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514억 53백만원을 수납하고 189억 4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2억 9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6억 4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8.9%임.

####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08.8%로 총 137억 23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2016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269억 52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세

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6,594	44,765	44,218	△1,829	잠실광장 점포 대부분 계약 해지, 을지로입구 상가단위 입찰 지연, 재산가액 변동 및 분납 등으로 감소
212-01 도로사용료	71,026	72,576	71,217	1,550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26%가 반영되어 사용료 부과액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223-03 변상금	4,715	3,792	2,152	△923	도로법개정(14.1.14) 이후 고의과실이 없었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도로관리청에서 변상금 부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14년 이후 변상금 부과건수 지속적 감소 추세
224-06 그외수입	16,914	19,669	18,021	2,755	○ 지하도 상가 점포 및 광고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귀속, 상가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초과수입 발생 ○ 공사 및 용역의 정산액, 소송관련 비용 등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차액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2,906	16,542	3,099	13,636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등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차액 발생

- 정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65억 94백만원 대비 96%인 447억 65백만원을 징수결정함.
  - 이는 잠실광장 점포 대부계약 해지, 을지로입구 상가단위 입찰 지연, 재산가액 변동 및 분납 등에 따른 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지하도상가 중 침체된 상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17.5월말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은 세입예산액 47억 15백만원 대비 80%인 37억 92백만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 이는 기존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의 경우 측량오류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 예외대상으로 하던 것을 「도로법」 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으로 변상금 부과 예외대상 범위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변상금 부과 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 2014년 법 개정이후 동일한 사유로 매년 징수결정액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보다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표] 참조), 예산액 169억 14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96억 69백만원으로 약 27억 5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지하도상가 점포 및 광고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금 등의 초과수입 발생과 공사 및 용역의 정산액, 소송 관련 비용 등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주요 내역

연번	기타잡수입	실제수납액 (백만원)	잡수입 처리사유
1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보도환경개선과)	9,944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도로시설과)	3,026	"
3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6개 도로사업소)	4,658	"

#### 다) 미수납액

○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89억 48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결손처분	2억 99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2억 9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86억 49백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5억 47백만원
- 도로사용료	13억 59백만원
- 기타사용료	25백만원
- 일반부담금	21백만원
- 과징금	4백만원
- 변상금	16억 4천만원
- 과태료	2억 41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19백만원
- 그외수입	16억 48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131억 44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중 **지난년도수입**(도로사용료,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금)이 131억 44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10억 93백만원 증가해 전체 이월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165억 42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9%인 30억 99백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2018.1.)”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세입금 이월액의 사유 분류를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개선하여 사유 중 ‘징수유예’가 ‘폐업 또는 부도’ 등 5종의 사유로 세분화되었음.

□ 개정 내용

○ 세입금 이월액의 사유 분류 : 현행 (5종)→ 개선 (10종)

- 결산서상 이월사유를 지방세법령상 체납 발생사유(10종)와 일치시킴

현행(5종)	개정안(10종)
무재산	무재산
행방불명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소송계류
징수유예	폐업 또는 부도
기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 다만,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자금압박'은 해당 없음

○ 그리고 다음 [표]에서 서울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 보면, 결손처분 내역 중 무재산이 2천 2백만원, 시효소멸<sup>1)</sup>이 2억 2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무재산 1백 60만원, 시효소멸 1억 2백원) 무재산은 감소한 반면 시효소멸이 증가함.

- 여기서, 시효소멸의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효소멸 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무재산(25억

1)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1백만원)”, “납세태만(75억 26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12억 12백만원)” 그리고 “기타(60억 3천만원)”가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전체 차년도 이월액의 32%를 차지하는 “기타”는 부과 반발, 사망, 징수곤란 장기체납액 등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데,
- 서울시에서 조차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 및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바, 미수납액 중 기타 사유로 차년도 이월된 세입의 관리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18,948,039
결손처분		298,935
	무재산	22,480
	행방불명	2,124
	시효소멸	201,997
	기타	72,334
차년도 이월액		18,649,104
	무재산	2,510,991
	행방불명	293,027
	납세태만	7,525,894
	소송계류	867,573
	폐업 또는 부도	1,212,105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2,997
	격리 또는 입원	640
	국외이주	13,981
	자금압박	192,153
	기타	6,029,743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212,987	6,497	411	8 (-8)	54 (-54)	-	219,895	208,443	3,490	-	3,490	7,962 (3.6%)
2016	216,080	2,680	758	190 (-190)	1,174 (-1,174)	-	219,518	207,330	6,497	5,880	617	5,691 (2.6%)
2015	197,807	2,999	4,537	27 (-27)	13 (-13)	6,266 (-6,290)	205,343	195,050	2,680	2,680	-	7,613 (3.7%)

####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2,129억 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 97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4억 1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98억 95백만원으로, 이 중 94.8%인 2,084억 43백만원을 지출하고 1.6%인 34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79억 6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79억 62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 등 21건([표] 참조)인데,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안전총괄과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	3,251	2,775	320	9.8%
2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	55	30	24	43.6%
3	상황대응과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운영	33	23	10	30.3%
4	상황대응과	지진 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140	81	59	42.1%
5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8	5	3	31.5%
6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80	53	27	33.1%
7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70	43	27	37.9%
8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40	16	24	59.5%
9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178	107	71	39.9%
10	보도환경개선과	추계초교 앞 등 2개소 통학로 및 산책로 보행환경정비공사(주민참여)	120	67	53	44.2%
11	도로계획과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10	3	7	72.7%
12	도로계획과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5,991	4,223	1,768	29.5%
13	도로계획과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	16	1	15	91.6%
14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경식재 유지관리	267	153	114	42.6%
15	도로계획과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체계 개선	91	53	38	41.6%
16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253	911	327	14.5%
17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17,895	16,149	1,600	8.9%
18	도로관리과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	12	0	12	100%
19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12,901	11,315	1,173	9.1%
20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492	2,146	346	13.9%
21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 직무분석 연구용역	80	41	39	48.7%

- 먼저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사업은 시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 가능한 선진제도의 실용화를 위해 국내 테스트 및 시범적용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천 5백만원 중 43.6%인 2천 4백만원이 불용됨.
  - 주된 사유는 당초 자율운행 드론기술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여 국내 시연을 하기 위해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과 현지 실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을 편성했으나,
  - 해당 자율운행 드론기술과 관련하여 프랑스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국내 시연을 위한 최소 구매수량 보증을 요구받았으나, 그 소요비용(약 3천만원)이 가용 예산액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구매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외빈초청여비(9백만원)와 민간인국외여비(1천만원)의 집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임.

[표] 2017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①	집행액 (a)	차년도 이월 (b)	불용액 ②=①-(a)-(b)	불용률(%) ②/①
계	55	31	0	24	43.6
사무관리비	35	30	0	5	14.2
민간인국외여비	10	0	0	10	100
외빈초청여비	10	1	0	9	90

- 2017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서울안전탐사단의 추진실적을 보면, ‘16년 발굴 우수기술 중 현장시연 완료한 기술로 ‘드론을 활용한 교량점검’이 있었으며, 2017년 역시 프랑스 자

올비행드론을 현장시연 예정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당초 동 사업 목적이 ‘시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선진제도의 실용화 추진’인 것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사업은 드론기술과 관련한 비중이 다소 과하게 편중되어 있었다고 판단됨.
- 더욱이 민간인국외여비와 관련해 제출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2017회계연도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드론기술은 원자력발전소, 교량시설 등 구조물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드론기술로,
- 이는 과거 2016년 시연한 ‘드론을 활용한 교량점검’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향후에는 선진제도 도입시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표] 공무국외여행계획 개요

여행목적	<p><b>&lt;프랑스 디아데스 &amp; 노바템 방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대규모 시설 안전점검의 세계최고 기술의 보유 업체로서 원격조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교량시설 등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음</li> <li>○ 상기 기술을 검토하여 교량안전과에서 추진 중인 '18년 드론을 활용한 한강교량 점검 시 업무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p><b>&lt;이글루 비전 런던 기술연구소 방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AR을 활용한 도시안전관리·도시안전·생활안전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감형 체험안전교육훈련 적용 현황 조사</li> <li>○ VR·AR을 활용한 소공간 몰입 체험교육훈련 기술과 시민참여형 시나리오 생성 모델 조사</li> <li>○ 상기 기술을 검토하여 안전총괄과내 사회안전팀의 시민안전교육과 안전도시만들기 업무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	--

	<p><b>&lt;코벤티리 대학 방문 방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벤티리 대학에서 개발한 건설안전관리 종사자 VR활용 교육훈련 기법 현장체험(설계-시공-감리-인허가), 생애주기, 리스크 감지 교육훈련기법 현장 체험</li> <li>○ 상기 기술을 검토하여 안전총괄과내 안전제도팀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의 건설안전관리자 교육 등 업무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여행기간	2017.12. 4(월) ~ 12. 10(일), 6박 8일			
여행국	프랑스 파리, 마르세유, 영국 런던, 코벤티리			
방문기관	○ 주요 해외출장 방문 개요			
	연번	기관명	사전 면담자	방문 예정일
	1	디아데스노바템	Christophe Raulet, CEO	'17.12.5~6
	2	이글루 비전 런던연구소	Jake Rowland , CEO	'17.12.7~8
3	코벤티리대학교	Huw O'Connor, Director of Strategic Project	'17.12.9	

- 또한, 민간인국외여비 방침서 상 프랑스의 디아데스&노바템 (구조물 안전점점 드론 기술) 방문, 영국의 이글루 비전 런던 기술연구소(도시안전분야 VR·AR 활용기술)와 코벤티리 대학 (건설안전관리 VR 활용)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 프랑스의 드론기술 관련 일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2 개 기관(영국의 이글루 비전 런던 기술연구소, 코벤티리 대학) 의 방문 역시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애초부터 방문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됨.
-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해외선진제도나 기술을 도입하려는 당 초 취지에는 동감하나 기 수행되었던 2016년 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 더욱이 사전에 해외업체와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사료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 및 전략논의, 건설정책의 발굴 및 연구, 정책 제안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천 6백만원 중 93.8%인 1천 5백만원이 불용됨.
- 1기 총괄건설정책자문단은 단장 1명과 자문위원 13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되어 2015년 4월 자문단이 발족되었고 2년의 임기 동안 17차례에 걸쳐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해왔음([표] 참조).

[표] 1기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성과

차수	일자	자문 및 논의 안건
1차	'15.05.28	도로함몰 특별관리 개선대책외1
2차	'15.06.28	신림선 민간참여 유도방안외 2
3차	'15.07.23	지진·재난관리대책외 2
4차	'15.09.17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 방향
5차	'15.10.22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지하화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6차	'15.11.26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외 1
7차	'16.01.19	(가칭)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8차	'16.02.24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외 2
9차	'16.03.24	서울역 7017 프로젝트외 2
10차	'16.04.21	도시기반시설종합관리기본계획외 1

11차	'16.05.26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계획외 1
12차	'16.06.27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전략 수립
13차	'16.07.28	서울시 건설분야 발전 대책
14차	'16.08.23	서울시 건설업 혁신방안
15차	'16.09.29	PSC 교량 손상텐던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16차	'16.11.28	서울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계획(안)외 1
17차	'17.04.20	서울시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체계 개선 용역

- 그러나 2017회계연도에는 1기 총괄건설정책자문단 활동이 2017년 4월 종료되고, 7월 제2기 총괄건설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도로계획과-9727, 2017.7.7.)이 수립되어 2기 총괄건설정책자문단원이 위촉됨에 따라
- 자문단 활동내역이 부재해 자문수당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총괄건설정책자문단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2018년도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안건

연번	자문 안건	관련부서
1	유희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안전총괄과
2	지진 피해 예상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 지진방재 정책 방안	상황대응과
3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4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 기준	도로계획과
5	도시지역 대심도 복층터널	”

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시설안전과
7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블록 도입추진	보도환경개선과
8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계획	도로시설과
9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
10	PSC교량 그라우트 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
11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 조성 마스터플랜 실행전략	동북권사업단

-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경식재 유지관리’는 4개 도로건설사업(구리암사대교건설, 남부순환로(개봉역) 구조개선,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의 조경식재공사 활착기 집중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억 67백만원 중 43%인 1억 14백만원이 불용됨.
- 식재공사는 준공 후 초기 2년간 수목 등의 조기활착 및 건전한 성장 유도가 중요하므로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45호)에 따라
- 식재공사비 2억원(직접공사비) 이상 사업인 “구리암사대교건설”, “남부순환로(개봉역) 구조개선”,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식재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던 것이나,
- 서울시는 식재공사 준공 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했다는 설명임.
- 여기서 식재공사 준공 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후 조경

식재 유지관리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노력 여하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것이라면 당초부터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사료됨.

-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사업은 시민통행에 장애가 되는 부적정 시설물을 이전·정비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8백만원 중 40%인 7천 1백만원이 불용됨.
- 서울시는 불용사유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수량 감소와 운영위원회 미개최 등을 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설물 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편성예산은 매년 1억 7천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수량의 감소추세에 맞춰 예산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 5년간 시설물 수량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영수량 (개)	2,339	2,297	2,197	2,141	2,032
감소수량 (개)	-	42	100	56	109
편성예산 (천원)	785,964	173,000	173,000	178,000	178,000
지출액 (천원)	607,487	126,418	161,758	156,866	107,290
불용액 (천원)	166,713	46,582	11,242	21,134	70,710
불용률	21.2%	26.9%	6.5%	11.9%	39.7%

-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사업은 2개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의 월 2회 정기점검을 철도건널목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1천 2백만원 전액을 불용함.
- 이는 SH공사의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개선공사로 건널목의 확장공사를 위해 해당 건널목이 잠정폐쇄되어 유지관리가 불필요해 진 것에 기인함.
-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에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있었더라면 이처럼 예산이 불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사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연관되는 타 사업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도시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업 1건에 5천 4백만원을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했는데,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안전 총괄 과	재난관리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00	54	-	'17.7.10	서울시가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도시간 네트워크 교류 및

		재난관리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	54		활동을 전담할 전문가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
--	--	------	------------------------	--------------------------	---	---	----	--	---

○ 이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가 록펠러 재단(100RC) 주관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100RC 회원 도시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한 서울시 재난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부족했던 사유는 일반 공무원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특수분야(재난회복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 소통능력을 겸비한 전문관을 투입하여 100RC 회원도시들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나,
- 당초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통계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마) 변경사용

○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 1건에 8백만원으로 지하 하수관을 별도의 이설공사로 추진하게 되어 감리비가 추가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안전총괄	재난관리	여의도지하병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351	8	-	'17. 10.11	지하 하수관을 별도의 이설 공사로

	과	재난관리	여의도지하병 커 개선사업	401-02 감리비	115	-	8		추진하게 되어 (공사변경) 감리비 추가 발생
--	---	------	------------------	---------------	-----	---	---	--	--------------------------------

- 이 사업은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여의도 지하병커에 대한 개선공사를 통해 다목적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 당초 다수의 지장물을 일괄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장물 관리기관의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와 각 지장물을 순차적으로 분리이설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가 추가되면서, 감리비 부족분이 발생함.
- 이 사업의 경우 2016회계연도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전용이 이뤄진 바 있는데, 지장이설물 추가 및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중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총 3억 78백만원을 사 고이월함.
- 이 처럼 2016회계연도에도 기편성된 예산을 대폭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역시 변경사용이 이뤄진 것은 사업 계획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바)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사업과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2건에 총 7억 58백만원임.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시설안전과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20	2017-11-27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긴급 수도권 지진안전점검단 운영
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391	2017-04-17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합계	2건	411		

- 먼저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사업은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응요령 전파에 2천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함.
  -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17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17.11.27. ~ ‘18.2.26.) 민간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외부전문가 39인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상태 점검, 보수·보강방안,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함.



□ 점검개요

- 추진기간 : '17.11.27 ~ '18.2.26(3개월)
- 점검대상 : 민간건축물
- 추진내용 : 건축물 상태 점검, 보수·보강방안, 지진시 행동요령 안내
- 점 검 단 : 외부전문가 39인 중심
- 신청안내 : 보도자료 제공, 서울방송, 전광판, SNS 활용 홍보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배너 활용
  - 전 화 : 120다산콜센터, 시설안전과(2133-8216~9)

- 이처럼 서울시가 포항 지진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긴급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되나,
-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교훈삼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3개 신규사업에 11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표] 참조), 민간건축물의 상태점검 또는 보수·보강대책에 관한 예산은 편성하지 못 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다소 능장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평소 안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표] 2017회계연도 지진 관련 신규사업 현황

회계	과	사업	'17년 편성액	비고
일반회계	상황대응과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150,000	신규
		지진 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140,000	신규
		공공건축물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	816,000	신규
계			1,106,017	

- 다음으로,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건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근로자(원고)가 서울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심 판결결과, 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담보금액 공탁을 위해 예비비 3억 91백만원을 확보해 지출한 것으로

2017년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예비비) 집행

- 지급시기 : 2017. 4. 20까지 관할 법원 공탁
- 사용금액 : 금391,000,000원

구 분	계	판결금	추가 담보금	비 고
금 액	391,000,000	304,413,686	86,586,314	추가담보금은 법원에서 판단한 금액으로서 이 자 발생분으로 추정됨.

-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서부도로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관내 지하차도에서 배수로 준설작업을 실시하다 이 구간을 지나던 덤프트럭의 작업차량 후미 추돌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으며,
- 사고 이후 치료 및 장기요양 중 2013년 6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시 사고가 서울시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대책 미강구 등 과실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 ‘17년 2월 8차까지의 서울시 변론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 1심에서 배상책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4월 11일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임.

□ 1심 판결 요지

- 본 사건 사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최완배)에게 293,906,986원 (=일실수입 78,805,401원 + 향후치료비 28,037,464원 + 개호비 123,064,121원 + 위자료 64,000,000원)을 지급하고,
-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장애연금 대지급분 10,50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안전조치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7. 4. 11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 1심 판결에 기인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추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실시된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를 전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 주문에 따른 담보금액을 신속히 공탁하고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

- 신청인이 피신청인 최완배를 위한 담보로 3억 8,000만원을,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담보로 1,100만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1811호 손해배상(산), 2016가단5165690호(병합) 손해배상(산)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이후 '17.10.27일 2심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일부패소), '18.1.15일 3심 판결선고(대법원, 피고 일부패소)에 따라 2017년 집행된 예비비(강제집행정지에 따른 공탁금 3억 91백만원)은 회수하여 세외수입(잡수입) 처리하고, 2018회계연도 예

산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4억 9백만원을 집행함.

###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 등 총 11건에 34억 92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과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3,070	156	5%
안전총괄과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46	90	37%
안전총괄과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등 작성지침 마련	401-01 시설비	500	280	56%
안전총괄과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00	183	92%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300	136	45%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2,253	1,015	45%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206-01 재료비	890	623	70%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17,895	146	1%
도로관리과	2017년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207-02 전산개발비	442	192	43%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1,803	258	14%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401-01 시설비	12,881	413	3%
계			40,480	3,492	

○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은 시설비 10억 15백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 이 사업은 당초 노들길 신길역과 대방역 간 방음벽 설치, 송파구 일대(위례성대로 10길4(교체), 문정로5길 20 외 2(정비)) 방음벽 교체 및 정비를 위한 것이었으나,

□ 사업내용

○ 위 치

- ▶ 노들길 신길역~대방역 : 방음벽 설치
- ▶ 송파구 위례성대로10길 4(방이초교) : 방음벽 교체
- ▶ 송파구 문정로5길 20(문정초교) 외 2 : 방음벽 정비

○ 사업규모 : 방음벽 설치 및 교체

○ 사업내용 : 신규 방음벽 설치 1개소, 방음벽 정비 및 교체 2개소

○ 소요예산

- 노들길 신길역~대방역 : 1,800백만원
- 송파구 위례성대로10길 4(방이초교) : 320백만원
- 송파구 문정로5길 20(문정초교) 외 2 : 20백만원
- 도로관리과 포괄비 : 113백만원

- 노들로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상시 점용하는 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 임시점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억 9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향후 이처럼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광장현대 5단지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의 경우, 실

시설계 용역 업체선정이 지연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용역 준공이 '18년 2월로 미뤄짐에 따라 1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 역시 사전준비가 충분했다면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활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음.

○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외 7건([표] 참조)은 절대공기 부족 또는 사업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총 사고이월액은 25억 3천만원임.

[표] 절대공기 부족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사고이월액	사유
1	안전총괄과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90	절대공기 부족
2	안전총괄과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등 작성지침 마련	401-01 시설비	280	사업 지연 (사전절차 이행)
3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136	절대공기 부족
4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1,015	사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5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146	사업 지연
6	도로관리과	2017년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207-02 전산개발비	192	사업 지연
7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258	사업 지연 (사전절차 이행)
8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401-01 시설비	413	절대공기 부족
계				2,530	

- 상기 사업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또는 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웠기 때문임.
- 사고이월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이긴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경우로, 상기 사업들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용역 발주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예산 편성 시점에서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 1)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15,058	5,657	-	-	-	-	20,715	16,920	3,462	2,000	1,462	333 (1.6%)
2016	5,300	47,307	-	263 (-263)	-	-	52,607	17,247	5,657	910	4,747	29,703 (56.5%)
2015	80,267	12,400	-	-	-	-	92,667	24,533	47,307	46,784	523	20,827 (22.5%)

####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150억 5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7억 1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9억 2천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6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억 3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7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207억 14백만원 대비 1.6%인 3억 33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낙찰차액 등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사업 등 총 5건에 14억 62백만원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01-01 시설비	4,187	45	1%
도로계획과	제2자유로 중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01-01 시설비	1,663	521	31%
		401-02 감리비	140	123	88%
도로계획과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 남단 교차로 설치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01-01 시설비	3,735	100	1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 정부시계) 확장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01-01 시설비	6,029	673	11%
계			15,754	1,462	

- ‘올림픽대로 ~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4천 5백만원과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 남단 교차로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1억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 이는 선행공사인 토목공사가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전기공사분 예산집행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인허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는 제2자유로 종점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 회계연도 시설비(16억 63백만원)와 감리비(1억 4천만원)에서 각각 5억 21백만원과 1억 23백만원이 사고이월됨.
  - 사고이월 사유는 설계VE, 교통처리 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인데,
  - 이처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나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다.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서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복 4차로 연장 5.76km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LH공사가 분담해야 할 500억원 중 2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편성했으나 전액 명시이월함.
  - 이는 분당선 연장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됨(‘16.6.27.)에 따라 현재 교통수요 재분석 시행 및 종로구지역 연결방안 등이 검토중에 있어 연내 토지보상 등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200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하고, 자하문길 교통정체 가중 등의 사유로 종로지역에서 사업시행을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도시계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억원 전액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2016년에도 명시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정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변 여건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더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숙면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20,715	20,715	20,715	20,715	-	-	-	100%
2016	13,224	13,224	13,224	13,224	-	-	-	100%
2015	108,620	108,620	93,787	93,787	-	-	-	100%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207억 15백만원이고 실제 207억 1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7억 15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17	35,762	19,719	-	-	-	-	55,481	42,485	12,087	9,073	3,014	909 (1.6%)
2016	19,843	49,488	-	230 (-230)	-	-	69,332	39,848	19,719	1,123	18,596	9,765 (14.1%)
2015	107,886	33,342	-	700 (-700)	-	-	141,228	60,916	49,488	49,488	-	30,824 (21.8%)

##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357억 6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1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4억 8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4억 85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8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9억 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9억 9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이상 사업은 ‘사가정 ~ 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 1건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2,791	1,813	530	19%

- ‘사가정 ~ 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은 강동구에서 구리시를 거쳐 중랑구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91백만원 대비 19%인 5억 3천만원을 불용함.
  - 이는 보상비 3억원, 낙찰차액 2억 2백만원, 서울시설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으로 절감된 감리비 2천 3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 보상비의 경우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위탁에 대한 감리비 절감의 경우도 당초 공단 위탁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편성 자체가 불필요했었다는 점에서 예산절감으로만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 등 총 4건에 30억 14백만원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1 시설비	34,551	1,442	4%
		401-02 감리비	1,300	136	10%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 개설(암사대교건설)	401-01 시설비	2,763	448	16%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1,126	988	9%
계			49,740	3,014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은 시설비 345억 54백만원 중 4%인 14억 42백만원, 감리비 13억 중 10%인 1억 36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국비교부가 당초 불투명하였으나 2017년 11월 20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임.
-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3,050	3,050	3,050	3,050	-	-	-	100%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30억 5천만원이고 실제 30억 5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억 5천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626,896	73,918	-	1,337 (-1,337)	310 (-310)	-	700,814	566,323	100,390	80	100,310	34,101 (4.8%)
2016	624,791	57,097	-	2,293 (-2,293)	20 (-20)	-	681,888	563,729	81,079	51,046	30,033	37,080 (5.4%)
2015	574,390	72,358	-	1,809 (-1,809)	25 (-25)	98,672 (-102,272)	646,748	560,962	57,097	42,083	15,014	28,689 (4.4%)



##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6,268억 9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9억 1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08억 14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63억 23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3억 9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341억 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341억 1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등 32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7,508	7,100	408	5.4
2	도로계획과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올림픽대교 남단)	8,480	8,113	367	4.3
3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36,206	33,846	1,175	3.2
4	도로계획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도시개발특별회계)	9,472	8,507	966	10.2
5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6,919	514	1,107	6.5
6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5,323	3,495	475	8.9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7	도로계획과	성북동길 확장	3,356	1,925	457	13.6
8	도로계획과	교차로 혼잡지역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	30	141	70.5
9	도로계획과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50	24	26	51.8
10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5,800	194	776	13.4
11	도로관리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6,236	61,118	4,522	6.8
12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5,339	5,386	596	3.9
13	도로시설과	정릉천고가교외 1개소 교면포장 개량	7,700	7,146	554	7.2
14	도로시설과	청담1교 보수	129	66	63	49.1
15	도로시설과	강변북로(산수동 구간) 방음벽 정비	200	99	101	50.4
16	도로시설과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강	7,908	7,381	527	6.7
17	도로시설과	PSC교(두모교) 안전성 향상 교면포장 개량	5,700	5,049	651	11.4
18	도로시설과	중량상단IC 내진성능개선	110	0	110	100.0
19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709	1,264	445	26.0
20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 척) 일상유지보수	11,181	9,909	1,272	11.4
21	도로시설과	상도터널외 3개시설 보수	710	475	235	33.1
22	도로시설과	도림천접속복개구조물 보수	770	483	287	37.2
23	도로시설과	가락지하차도외 1개시설 (천호지하차도) 보수	75	0	75	100.0
24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7,126	6,542	584	8.2
25	교량안전과	한남대교 보수공사	1,220	867	353	29.0
26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4,384	1,200	468	10.7
27	교량안전과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	6,235	5,090	1,145	18.4
28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101	10,466	635	5.7
29	교량안전과	장안교 성능개선	7,071	6,428	643	9.1
30	교량안전과	탄천2교 보수공사	2,657	2,331	326	12.3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31	교량안전과	신길로 매물교량 철거공사	800	367	433	54.1
32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313	2,038	3,666	23.9

○ ‘교차로 혼잡지역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서울시내 구의사거리 외 5개소의 교차로 혼잡지역의 도로구조 개선방안 마련 및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원 대비 70.5%인 1억 41백만원을 불용함.

- 이는 당초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계획을 동시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기술심사담당관-2163, 2017.2.1.)’에 따라 기본계획 비의무대상으로 타당성조사만 시행하고, 사업대상지가 변경 축소([표] 참조)되어 용역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표] 사업대상지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구의사거리, <u>서울혁신파크 교차로</u> , 독산사거리, 말미사거리, 태릉입구역 사거리	구의사거리, 독산사거리, 말미사거리, 태릉입구역 사거리	서울혁신파크 교차로는 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책정

- 관련 추진절차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사업대상지 중 ‘서울혁신파크 교차로’가 제외된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중복됨에 따른 것으로 간혹 본 예산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간에 중복이 발

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 주민참여예산 수립 시 본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중랑상단IC 내진성능개선’사업은 중랑상단IC 교량받침 14개소를 교체하여 내진성능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 1억 1천만원 전액 불용함.
  
-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2.12월 2010. 5월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2016. 10월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도로시설과-12090, ‘16.10.7.)에 따라 사업을 계획한 것인데,
  
- 당해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랑상단IC교의 내진성능을 재평가한 결과 2010년 용역결과와 달리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임.
  
- 서울시는 내진보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02년도에는 주요 도로시설물(1종, 2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내 내진성능평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외국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도입해 활용했음.
  
- 이후 국토교통부의 내진평가기준이 2004년도에 수립되고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서울시는 개선된

내진성능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중랑상단IC의 내진성능을 재평가한 결과, 내진개선공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것임.

- 따라서 최초 내진평가 당시(2002년)의 기술력 한계로 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만큼 중요시설 및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 및 보수·보강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등 5건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계약심사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계약심사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50	24	26	51.8
2	도로시설과	청담1교 보수	129	66	63	49.1
3	도로시설과	상도터널외 3개시설 보수	710	475	235	33.1
4	도로시설과	도림천접속복개구조물 보수	770	483	287	37.2
5	교량안전과	신길로 매물교량 철거공사	800	367	433	54.1
계			2,459	1,415	1,044	

- 먼저, 계약심사절감액의 경우는 설계서 작성 시 건설공사표준 품셈 및 각종 설계가이드를 기준으로 일위대가<sup>2)</sup>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심사과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형 품셈을 적용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설계부서와 계약심사과가 서로 다른 품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낙찰차액의 경우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로서 통상적으로 10% 내외가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상기 [표]의 사업들과 같이 불용율이 30%를 넘어 50%에까지 이르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바,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다) 예산전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감독위탁 공사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3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시설비로 전용함.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운영	감독위탁 공사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대행 사업비	8,840	310	-	'17.12.12	당초계획 대비 2개 도로사업소 소관시설물을 추가연계하여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독위탁 공사관리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함
		도로시설물 운영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401-01 시설비	1,260	-	310		

2) 공사에 대하여 관련된 보수나 사용대금

- 이 사업은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재난대응을 위한 관리센터 구축을 위해 2017회계연도에 신규로 12억 6천만원을 편성는데,

#### ※ 사업 개요

- 규모 : 42개 시설물(터널 29, 지하차도 1, 교량 12)  
 ※ 연계정보 : 총 45개소(영상 33, 방재 1, 계측 11)
- 용역기간 : 2017. 6. 16 ~ 2018. 6. 30
- 용역비 : 1,570백만원
- 구축내용
  - 통합관리센터 기본 플랫폼 구축
  - 북부사업소 상황실, 강남기전관리소, 여의도 수난구조대, 올림픽대교에 자가망 설치
  - 기존 TOPIS에 연계된 CCTV를 통합관리센터로 영상정보 연계

- 2017년도에 4개 도로사업소의 교량 및 터널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나머지 2개 도로사업소로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201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결과<sup>3)</sup>(재정관리담당관-12438, 2017.10.16.)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되어 차년도 예산확보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나머지 2개 도로사업소(남부, 성동) 시설물을 추가 연계하여 전체 6개 도로사업소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후,
- 차년도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였고, 이

3) [재검토] 안전총괄본부 내에서 별도 추진중인 '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과 중복가능성 및 일부 시설물만 통합구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 차원의 모든 유사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통합 구축하는 방안 재검토

에 따라 대상 시설물이 당초 34개에서 42개로 8개 증가하였으며, 연계정보 대상이 37개소에서 45개소로 8개소 증가하여 용역비 부족분 3억 1천만원을 전용으로 충당한 것임.

□ 사업 변경 내용

- 세부 변경 내역 : 시 소관 터널 8개소 추가 연계
  - 남부도로사업소 소관 6개소 : 상도, 국사봉, 난곡, 산북, 호암1, 호암2터널
  -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2개소 : 금호, 옥수터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대상 시설물 (개)	교량	12	12	-
	터널	21	29	증)8
	지하차도	1	1	-
계		34	42	증)8
연계정보 대상 (개소)	영상	25	33	증)8
	방재	1	1	-
	계측	11	11	-
계		37	45	증)8

- 서울시가 동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용을 통해 6개 도로사업소 전체를 하나로 연계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투자심사의 ‘재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용으로 확대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은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등 총 12건에 13억 37백만원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계



약금 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 등에 기인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도시고속 도로망 확충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5,297	16	-	'17.4.26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 계약금조정
		도시고속 도로망 확충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401-02 감리비	407	-	16		
2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올림픽대교 남단)	401-01 시설비	4,700	360	-	'17.10.27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 계약금조정
		간선도로 망 확충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올림픽대교 남단)	401-02 감리비	300	-	360		
3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신림~봉천터 널 건설	401-01 시설비	24,600	109	-	'17.8.1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 계약금조정
		간선도로 망 확충	신림~봉천터 널 건설	401-02 감리비	1,000	-	109		
4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신림~봉천터 널 건설	401-02 감리비	1,109	116	-	'17.12.20	보상비 부족으로 감리비 조정
		간선도로 망 확충	신림~봉천터 널 건설	401-01 시설비	24,491	-	116		
5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울곡로(창경 궁앞)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4,800	50	-	'17.9.6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 계약금조정
		간선도로 망 확충	울곡로(창경 궁앞)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500	-	50		
6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안양교 확장	401-01 시설비	9,500	264	-	'17.8.3	감리비 부족
		간선도로 망 확충	안양교 확장	401-02 감리비	500	-	264		
7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선사로~고덕 지구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5,000	94	-	'17.9.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
		간선도로 망 확충	선사로~고덕 지구간 도로확장	401-02 감리비	500	-	94		
8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사가정길(장 안삼거리~전 농삼거리)확 장	401-01 시설비	530	40	-	'17.3.28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
		간선도로	사가정길(장	401-02	-	-	40		

		망 확충	안삼거리~전농삼거리)확장	감리비					
9	도로 계획	간선도로 망 확충	성암로 보행단절 구간 개선	401-01 시설비	260	10	-	'17.11.16	교통신호기 이설 시 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른 감리비 조정
		간선도로 망 확충	성암로 보행단절 구간 개선	401-02 감리비	-	-	10		
10	도로 시설	도로시설 물운영	교량터널 통합 관리센터 구축	401-02 감리비	128	128	-	'17.5.12	연차별 투자 사업으로서 전문감리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도로시설 물운영	교량터널 통합 관리센터 구축	401-01 시설비	1,132	-	128		
11	교량 안전	일반교량 관리	장안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6,775	42	-	'17.5.26	감리비 부족
		일반교량 관리	장안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250	-	42		
12	교량 안전	일반교량 관리	사천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2,317	108	-	'17.12.14	감리비 부족
		일반교량 관리	사천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400	-	108		
총 변경건수: 12건					94,496	1,337	1,337		

- ‘사가정길(장안삼거리 ~ 전농동사거리) 확장’은 서울 동북권지역의 간선도로인 사가정길 미확장 구간의 교차로구간을 확장하는 공사로 시설비 5억 3천만원 중 4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함.
- 이 사업은 당초 ‘16.12.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한전주 이설 지연과 동절기 굴착통제 등으로 준공기한이 ‘17.5.31일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감리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임.
-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불확실

성을 감안하여 초기에 전체 공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준공기한을 가급적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이처럼 의회가 당초 승인하지 않았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성암로 보행단절 구간 개선’사업은 성암로 가좌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주변 보행단절구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 편성된 시설비 2억 6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함.

- 기존 보도의 후퇴조정 시 저촉되는 교통신호기 이설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교통신호기 이설 시 의무화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를 위해 감리비를 추가 확보한 것인데,

- 이 사업 역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감리비를 변경사용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지양되어야 할 것임.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67건에 1003억 7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중 30% 이상 사고이월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관리부 서(과)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사유
1	도로 계획 과	올림픽대로(청담도로공원 일대) 지하화 타당성조사	300	257	85.7%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3,000	2,878	95.9%	경원선철도이설로 2017.10까지 공사 중지 와 토지 보상진행
3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00	3,959	99.0%	토지보상 미성립된 토지등 에 대해 보상절차(감정평 가) 중
4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6,919	15,298	90.4%	토지(교학사)보상 진행 중
5		사당로 (구) 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2,727	2,427	89.0%	토지보상 미성립된 토지등 에 대해 보상절차(감정평 가) 중
6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2,817	9,203	71.8%	공사와 계약 협상 지연으 로 인해 계약이 지연
7		금호로 확장	4,144	3,725	89.9%	토지보상 미성립된 토지등 에 대해 보상절차(수용재 결 진행) 중
8		서부간선도로 친환경공간 조성	380	190	50.0%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공공개발센터) 과 연계 검토를 위해 과업기간 연 장
9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932	474	50.9%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 렴에 일정 기간 소요
10		남대문로 일대 지하보행체계 연결 타당성조사	200	84	42.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1		동남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및 도로체계 기본구상	300	97	32.3%	유관기관 협의 등에 일정 기간 소요
12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300	157	52.3%	관계분야 전문가(서울시 도로전문가 포럼)에서 논 의한 결과 보완 등에 일 정 기간 소요
13		성암로 보행단절구간 개선	260	212	81.5%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 의 검토 등에 장기간 소 요되어 발주 지연('17.10)
14		고가차도 철거	5,800	4,830	83.3%	통합추진 사업인 한남대로 BRT 설계지연 및 구로교 차 철거 실시설계용역 지 연
15		풍납동 일대 천호사거리 주변도로 정비	340	340	100.0%	풍납토성 문화재 현상변경 및 시굴조사 허가기간 소 요로 사업지연

연번	관리부 서(과)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사유
16		금호지역일대 도로연결체계 기본구상	300	155	51.7%	준공시기 미도래(완료기간 '18.4.18)
17		방화터널 김포방향 진출입램프 타당성조사	200	83	41.5%	유관기관 협의 등에 일정 기간 소요
18		성북천 보행교량 설치	500	450	90.0%	교량 경관계획 심의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발주 지 연('17.10)
19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300	211	70.3%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하였으나 용역준공기한 미 도래
20	도로 관리 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5,339	9,357	61.0%	부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21	도로 시설 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5,231	2,262	43.2%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 후, 18년 상반기 공사시행
22		교량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70	960	61.1%	사업구간 추가 및 타사업 추진일정 연계작업 필요에 따른 추가 작업기간 소요
23		도림천1복개 보수	700	600	85.7%	기본 및 실시설계 중부 구 간 제외 후 추진 예정
24		신답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900	789	87.7%	사전절차 이행 및 발주지 연
25	교량 안전 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15,445	4,971	32.2%	사전절차(입찰참가자격 결 정) 지연
26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4,384	2,716	62.0%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분 쟁으로 계약체결 지연 ( '17.10.27)
27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4,330	1,813	41.9%	사전절차(토지보상) 지연
28		구로1교 보수공사	640	547	85.5%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 대가 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29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313	9,609	62.8%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 대가 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30		모래내고가 보수공사	1,765	973	55.1%	철도 과선구간 교량 작업 시간에 대해 협의 지연과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공 사기간 연장('17.12.31→ '18.6.30)
31		행주IC 보수공사	710	647	91.1%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 대가 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은 국회대로는 지닌 지역간 단절 및 상습정체, 주변지역 낙후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차로수를 축소하여 녹지, 공원 등 시민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28억 17백만원 중 72%인 92억 3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사업 추진 중(2017.8.) 제물포터널의 공정과 연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단계별 시공’에서 ‘동시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2단계 설계용역 발주 절차 이행으로 설계기간 절대 부족, 시공사와의 협상 지연 등에 기인함.

[표] 사업추진 계획변경

기 존			변 경
구 분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1,2단계 동시 추진
시행방안	제물포터널과 병행 추진	제물포터널 개통후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신월IC~경인2지하차도	○ 위 치 : 경인2지하차도~국회의사당	
	○ 규 모 : 연장 1.6km, 폭 55m	○ 규 모 : 연장 6km, 폭 40~55m	
	○ 기 간 : '13.05.~'19.12.	○ 기 간 : '18.01.~'23.12.	
	○ 사업비 : 716.5억원	○ 사업비 : 1,979.5억원	

- 이 사업은 2016회계연도 예산 135억원 중 약 92%인 128억 17백만원이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후, 본예산 없이 명시이월액만 편성되었으며, 이 중 72%가 재차 사고이월되어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임.

- 동 사업이 이처럼 또 다시 이월을 낳게 된 원인이 당해연도 사업추진과정에서 1, 2단계를 동시시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 당초 의회 예산승인 내용과 달리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동시시공이 단계시공에 비해 유리했다면 사업계획 초기에 이미 검토되었어야 할 것임.

○ ‘고가차도 철거’사업은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고가를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 사업은 한남2고가차도와 구로고가차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현액 58억 원 중 83.3%인 48억 3천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2017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①	집행액 (a)	사고이월 (b)	불용액 ②=①-(a)-(b)	불용률 ②/①
고가차도 철거	계	5,800	194	4,830	876	15.1
	시설비	5,700	194	4,730	876	15.3
	감리비	100	0	100	0	0

< 사업개요 >

- 위 치 : 한남2고가(한남동 707-327), 구로고가(가리봉동 139)
- 규 모 : 한남2고가(폭 15m, 연장 341m), 구로고가(폭 18.5m, 연장 531m)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총사업비 : 14,700백만원(한남2고가 5,200, 구로고가 9,500)
  - '17년 예산 : 5,800백만원(설계비 430, 공사비 5,270, 감리비 100)

- 한남2고가 철거공사는 한남대로 BRT 설치공사와 통합추진 하는 사업으로 BRT 설계지연(완료일 '17.10)에 따른 본공사 발주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17.12 ~ '18.2)하여 공사비 47억 19백만원, 감리비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처럼 주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연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쇄적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구로고가 철거 실시설계 용역은 철거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수립에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17.12.01 → '18.2.28)되어 시기 미도래에 따라 1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주변 교통영향분석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은 사업계획 시점에서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과업들인만큼 용역기간 산정 시 충분히 고려하여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장비보관소,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53억 39백만원 대비 61%인 93억 57백만원이 사



고이월됨.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보상세대는 60세대, 보상비는 192억원<sup>4)</sup>으로 '16.4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17.11월에야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늦어져 시설비 및 감리비가 차년도로 이월된 것임.

□ 보상 추진현황	
○	보상세대/보상비 : 60세대(192억원)
○	보상기간 : '16.4.~'17.11.
○	추진경위
-	'16. 4.29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6. 8.11 : 감정평가 완료
-	'16. 9.30 : 보상협의 실시 (협의 66%)
-	'16.10.31 : 미협의 대상 재결 신청 (재결 34%)
-	'17. 2. 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
-	'17. 3.30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완료
-	'17. 4. 4 : 수용개시일 (토지 등 취득일)
-	'17. 4.18 : 미이주자 대상 명도소송 등 제소 방침
-	'17. 6.28 : 명도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장 접수
-	'17. 7.20 : 이의재결 결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
-	'17.11.17 : <b>보상 및 이주 완료</b>
-	'18. 5.25 : 건물철거 완료 및 공사 진행중

[표] 보상세대 이주현황

구 분	이주대상		이주완료	미이주	비 고
계	60세대		60세대	-	
청 사	주거용	27세대	27세대	-	
	교회	1세대	1세대	-	
공 원	주거용	32세대	32세대	-	

4)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위치는 금천구 시흥3동 961-5회 12필지 및 강남순환도로 산암교 하부로 청사 및 공원 설치를 위해 부지면적 4,601m<sup>2</sup>, 제설기지 설치를 위한 부지면적 6,459m<sup>2</sup>의 규모

- 일반적으로 신규 건설공사현장에서 보상 문제가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 역시 보상문제 협의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대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는 바,
  - 보상문제가 포함된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보상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집행 가능한 보상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보상협의를 완료되어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 ~ 녹천교)’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부터 녹천교 구간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려는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30억원 중 95.9%인 28억 78백만원이 사고이월했는데,
- 이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내 경원선 철도이설과 관련하여 공사가 2017.10월까지 중지됨에 따른 것과 “녹천마을 도로개설” 관련 보상추진(감정평가 완료. '17.12)이 늦어짐에 따른 것임.
  - 이 사업의 경우 연관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였고 보상 역시 예상외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녹천마을 도로개설 관련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5)에 따라 토지보상 미성립된 토지등에 대해 보상절차(수용재결 진행)가 현재 진행 중임.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출의 다리 지·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69억 19백만원 중 90.4%인 152억 98백만원이 사고이월됨.

- 이 사업 역시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토지보상 미성립된 토지 등에 대해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사업대상부지 소유주인 교학사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임.

- ‘17.8월 가산동 구간(교학사 부지) 실시계획인가가 ‘18.2.22일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고, ‘18.6월 현재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중(6.22일 판결예정)으로 기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금 127억 원마저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해 진 상태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

---

5)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할 것으로 사료됨.

<p>□ 보상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9.29 : 독산동 구간 보상완료(15,666백만원)</li> <li>○ '16.11.~12 : 가산동 구간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 실시</li> <li>○ '17.06.30. : 가산동 구간 수용재결신청(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li> <li>○ '17.08.10. : 가산동 구간 수용재결(손실보상금 12,713,616,100원)</li> <li>○ '17.08.25. : (주)교학사(가산동 구간)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결정(~18.2.22.까지)</li> <li>○ '18.06월 현재: (주)교학사(가산동 구간)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 중(6.22일 판결예정)</li> </ul> <p>□ 확정 보상금액 :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로 기존 수용재결 127억은 무효가 됨</li> </ul>
--

- ‘구로1교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표] 참조)은 동일 사유인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대가 기준<sup>6)</sup> 마련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됨.

[표]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대가 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연번	관리부 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1	교량 안전 과	구로1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640	547	64
2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401-01 시설비	15,313	9,609	3,666
3		행주IC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710	647	34
계				16,663	10,803	3,764

- 서울시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2017회계연도 시설물 내진보수·보강 관련 사업들에 다음 [표]와 같이 총 211

6) 교량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계획(교량안전과-4900, 2017.3.17.)

역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표] 2017회계연도 내진보수·보강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관리부서 (시행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1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월릉하단IC 보수	437	357	-	80	
2	"	여의상류IC램프2교 보수	300	232	-	68	
3	"	목동교동측IC 보수	935	663	-	272	
4	"	중랑상단IC 내진성능개선	110	-	-	110	성능 확보
5	"	서초1고가 내진성능개선	250	249	-	1	
6	"	서초2고가 내진성능개선	250	249	-	1	
7	"	서초3고가 내진성능개선	250	249	-	1	
8	"	수서IC 내진성능개선	550	550	-	-	
9	"	서빙고다리 내진성능개선	490	425	-	65	
10	도로시설과 (성동 시설)	신답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900	-	789	111	
11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한남1고가 외 24개소)	15,313	1,519	9,609	3,666	
12	강서도로사업 소	구로1교 보수공사	640	29	547	64	
13	"	행주IC 보수공사	710	29	647	34	
계			21,135	4,551	11,592	4,473	

- 서울시가 이처럼 내진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기준인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용역대가 기준'을 2017.3월에야 마련했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측면이 있고,

- 이로 인해 ‘구로1교 보수공사 외 2개 공사’의 사고이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예산편성에 앞서 관련 기준수립을 반드시 선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마 . 도로굴착복구기금

###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이월금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금	기타	계	고유목적사업비등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이월액
2017	38,614	-	-	447	16,471	-	21,696	38,614	25,164	13,450	-	-
2016	40,500	-	-	407	17,265	-	22,828	40,500	24,029	16,471	-	-
2015	41,533	239	-	469	15,585	-	25,240	41,533	24,268	17,265	-	-

#### 가) 개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4억 47백만원, 예치금회수 164억 7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216억 96백만원을 합한 386억 14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65.2%인 251억 64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4억 5천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결산서 p.141)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4억 7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21억 43백만원과 사용액 251억 64백만원의 차(30억 21백만원)를 합한 13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30억 21백만원 적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16,471	△3,021	22,143	25,164	13,450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성액(이자수입, 기타수입) 대비 집행액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자금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됨.



[그림]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



다)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145)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84억 89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sup>7)</sup>에 의해 16억 99백만원이 증액된 401억 88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은 100%에 해당하는 386억 14백만원을 지출함 ([표]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8,489	40,188		40,188	38,614	

- 지출계획액이 수정된 주된 요인은 굴착원인자(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계획을 당초 252억 87백만원에서 270억 81백만원으로 증액하였고,
- 증액분을 여유자금인 예치금에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예치금은 전년도 164억 71백만원 대비 134억 5천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 도로굴착복구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굴착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굴착의 부득이한 측면은 인정되나 잦은 도로굴착이 사고의 원인과 도로포장체의

7) 2017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도로관리과-17222, '17.10.)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2016년)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고유목적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25,164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4,962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201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1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소관실국 (부서명)
1 (35)	예산 낭비성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평가 필요	○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민원 제기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예산낭비성 대형 건설사업의 재발 방지 노력할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 (36)	부적정한 도로보수 공사비 집행 지양	○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3 (58)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향후 성인지예산 수립 시 성과목표가 누락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해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 35. 예산 낭비성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평가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에서는 2017회계연도에 146,000,000원의 예산(토지보상비)을 집행하여 중랑구 면목동(동2로)과 동대문구 휘경동(한천로)을 잇는 겹재교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겹재교 건설 사업의 취지와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내용

##### ○ 사업취지

- 중랑천으로 단절된 중랑구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 ○ 필요성

- 중랑구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장래 용마터널 개통 등에 따른 사가정길, 망우로 등의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기대효과

-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발전 및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

○ 위치 : 중랑구 면목동(동2로) ~ 동대문구 휘경동(한천로)

○ 종전 투자심사 경위

연번	종전심사결과			심사의뢰 사유(차기)
	일자	결과	요지 (조건/재검토사유 등)	
1	2004.10.22	조건부추진	기본설계용역 완료후 실시설계전 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	
2	2005. 7.22	재검토	투자시기 조정(장안교 및 사가정길 확장공사 준공이후 재검토 시행)	사업비 증가 (31,000백만원→48,800백만원, 증 17,800백만원)
3	2005.10.11	재검토	투자시기 조정(장안교 및 사가정길 확장공사 준공이후 재검토 시행)	
4	2006. 4.11	적정	동·북부지역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비 증가 (48,800백만원→59,190백만원, 증 10,390백만원)
5	2008.10.24	적정	추가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됨	사업비 증가 (59,190백만원→75,416백만원, 증 16,226백만원)
6	2010.05.12	결정유보	만원관련 사업비의 의견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및 토지 추가보상 관련 예산 절감등의 방안 추가검토 필요	확대보상 추가 및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학교교육청 등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재심사 (75,416백만원→113,582백만원, 증 38,166백만원)

결재교 건설 사업예산은 최초 31,00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의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사업 예산이 113,582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차례의 투자 심사를 거치는 동안 잦은 설계 변경과 함께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공기는 연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재교 상관이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전동중학교 정문 앞을 통과하게 되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검재교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공사가 지체되자 중랑구 측의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검재교의 본선 교량은 2015년 6월 22일 완공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에는 교량과 중랑천 둔치를 잇는 연결 램프와 엘리베이터가 개통된데 이어 2017년 1월 30일 검재교가 준공되었습니다. 검재교 건설 사업은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증액과 함께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는 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113,582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업 예산이 85,026백만원으로 감액되는 결정과정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검재교 연도별 예산편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5,026	15,000	17,400	10,700	5,280	13,000	4,000	8,000	5,000	6,500	146
보상비	39,211	13,500	7,000	7,000	5,280	5,000	1,285	0	0	0	146
공사비	42,765	1,300	10,000	3,400	0	7,500	2,415	7,500	4,650	6,000	0
감리비	3,050	200	400	300	0	500	300	500	350	500	0

## **나. 시정권고**

겸재교 건설 사업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검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민원 제기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겸재교 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예산낭비성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주관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겸재교 건설 사업이 추진된 일련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여 예산낭비성 건설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 부적정한 도로보수 공사비 집행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에서는 매봉터널 보수공사와 가락지하차도 외 1개(천호지하차도) 보수공사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 사업내용

- 공 사 명 : 매봉터널 보수
- 공사기간 : 2017.04.13.~09.30.
- 총공사비 : 414,000,000원
  
- 공사명 : 가락지하차도 보수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79
- 공사비 : 46,000,000원
  
- 공사명 : 천호하차도 보수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56
- 공사비 : 29,000,000원

이상 3건의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는 매봉터널 보수공사와 함께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예산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천호지하차도 보수공사의 경우 천호대로 BRT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평면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공사 중복을 이유로 보수공사가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안전총괄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에는 가락지하차도와 천호지하차도 보수공사 예산 75,000,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나. 시정권고**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8.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가.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경우가 5개 실국 총34개 사업이고, 예산서에는 있으나 결산서에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누락한 경우가 5개 실국 총15개 사업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3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4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5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지원
6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7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8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9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 상담소 운영
10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운영
12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3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1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15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6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센터 운영
17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방문교육서비스
18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례관리
19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결혼이민자 멘토링
20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1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자녀언어발달 지원
22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23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한국어교육 운영
24	관광체육국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5	관광체육국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연번	실국	사업명
26	관광체육국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27	시민건강국	국가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 운영-영유아검진 보건소유지관리비
28	시민건강국	국가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 운영-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9	시민건강국	국가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 운영-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
30	시민건강국	국가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 운영-일반검진비 지원
31	시민건강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32	시민건강국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33	안전총괄본부	어린이 안전 교육강화
34	도시계획국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3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	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6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위기 실태여성 현장상담(목표치 누락, 실적치 기입)
7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8	여성가족정책실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9	평생교육국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10	평생교육국	서울동행프로젝트
11	평생교육국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
12	평생교육국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시민건강국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목표치 누락, 실적치 기입)
14	주택건축국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목표치 누락, 실적치 기입)
15	주택건축국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목표치 누락, 실적치 기입)

성인지예산 수립 시 성과목표를 누락하거나, 결산서 상 성과목표와 실적의 기록을 누락하였다는 뜻은 성인지예산사업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성인지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가 양성평등 및 성차별 개선과 관련성이 없거나 미흡하여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한 성평등 효과분석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와 효과분석 사례

실국	사업명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서울혁신기획관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과목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 도모 <효과분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특정다수로 효과 분석 없음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과목표> 기후변화 교육 횟수 <효과분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교육한 후 단순히 남녀 참여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성인지 개선효과를 알 수 없음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지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곤란합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에서는 향후 성인지예산 수립 시 성과목표가 누락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상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결산(안) 심사 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 증가,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성인지 사업 참여자 중 여성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등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합니다.